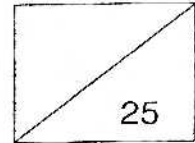


【공개】



전원위원회

의안번호	제05-16호
의결 년 월 일	2005. 3. 28. (05년 제7차)

의결안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안)**

제 출 자	사 무 총 장
제출년월일	2005. 3. 28.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요약)

1. 검토이유

- 현재, 6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심의(계류) 중임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주요쟁점사항별로 검토하고,
-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자함

2. 주요내용 및 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13개)

- 인권위 활동 강화 및 보완(10개) : 위원회 독립성 강화, 사무총장 정무직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조사권 강화, 조사대상기관 확대, 진정인 보호,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 권고의 실효성 제고, 법 적용범위, 용어변경 등

- 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2개) : 성차별시정위원회 설치, 인권위원 남녀 성비구성 문제

-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1개)

○ 추가개정(안)

- 위원장 권위시 직무대행자 지정, (가칭)인권교육원 설치, 자료실을 도서관으로 개칭, 고용주에 대한 차별행위 입증책임 신설, 취하사건 각하대상 제외, 합의종결 신설, 면책조항 신설 등

목 차

I. 검토배경	1
II. 검토방향	2
III. 개정안 주요내용	3
IV. 주요 쟁점사항 검토	6
□ 위원회 활동 강화 및 보완	7
□ 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33
□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36
V. 추가개정	37
VI. 향후 추진계획	44
붙임 :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검토	45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검토배경

□ 현재 6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

의안별	찬성	발의(제출)	추진상황	주요내용
최재천 의원(안)	150인	2004.12.10	◦ 법사위상정 : 2004.12.28 ◦ 제1소위 심의 중	◦ 인권위 독립성 다수 개정사항 포함
유선호 의원(안)	37인	2004.7.27	"	◦ 지방사무소 설치
정성호 의원(안)	18인	2004.8.13	"	◦ 퇴직인권위원 공직 취임제한 규정 삭제
이은영 의원(안)	27인	2005.2.2	◦ 법사위상정 : 2005.2.18 ◦ 제2소위 심의 중	◦ 개인정보특별위원회 설치
김애실 의원(안)	15인	2005.3.2	-	◦ 성차별시정기능 강화
정부 제출(안)		2005.2.17	-	◦ 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 정부(안)의 경우, 인권위가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 인권위 입장이 반영되었음
- 그러나, 의원발의안의 경우, 인권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인권위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인권위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위의 입장을 정리한 후 국회 심의과정에 인권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자 함

11. 검토방향

- 인권위법 개정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되, 주요 쟁점사항 위주 검토
 - 인권위 활동 강화 및 보완(최재천·유선호·정성호 의원안, 정부안)
 - 독립성 강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
 - 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정부안, 최재천·김애실 의원안)
 - 성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이은영 의원안)
-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과 함께 별도 종합적으로 검토(검토안 붙임)
- 검토대상에서 제외
 - 이미 검토된 사항
 - 정부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
 - 검토의 필요성이 없는 사항
 - 유선호 의원안과 정성호 의원안은 최재천 의원안 및 정부안에 이미 반영
 - 최재천 의원안 중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지방사무소 설치 등 정부안에 반영된 사항
- 추가개정 필요성 검토
 - 자료실을 도서관으로 명칭변경, 합의종결 신설, 취하사건 각하 대상 제외, 면책조항 신설 등

Ⅲ. 개정안 주요내용

□ 인권위 활동 강화 및 보완

최재천 의원(안)	정부 제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삭감시 국무회의에서 위원장 의견청취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함 -상임위원 사무총장 겸직, 사무차장 2인 신설 -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위원장이 행사 -규칙제정권, 감사원법 등 타법률의 적용배제 등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법령·정책 등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조사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중인 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 시설방문조사시 위원회 의결 삭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조건 완화, 재정신청권, 동행명령권, 통신사실 조화, 조사 중인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등 ◦ 진정인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방문조사시 시설관계자 입회 금지, 진정함 설치 의무화, 재심절차 규정, 진정의 기각사유 구체화 등 ◦ 인권위 업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문사 조사·구제, NAP 권고, 세계인권선언기념행사 등 ◦ 벌칙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인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의 기각사유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피권고기관의 권고이행여부 통보기한 60일 설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인권위원 공직취임 제한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인권위원 공직취임 제한규정 삭제 -인권위원 임기만료시 30일 이내 임명 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용어정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보호소→외국인보호목적 시설 -구금·보호시설→교정·보호시설 등 -적용범위 변경: 국민, 외국인, 법인 포함 	

□ 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정부제출(안)	최재천 의원(안)	김애실 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내부구조 개편(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설치(3~4인 구성) -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내부구조 개편(제12조, 제13조, 제16조) -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설치(3~5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내부구조 개편(제12조) -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u>성차별시정위원회</u>, 차별시정위원회(성차별 제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사무소 설치 ○ 차별행위 규정(제2조제4호 내지 제7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조사대상에 성희롱 명시 - 제30조제1항의 조사대상 기관 재규정 - 제30조제2항의 차별행위에 대한 정의를 제2조로 이동(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사무소 설치 ○ 차별행위 규정(제2조제5호 내지 제8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조사대상에 성희롱 명시 - 제30조제1항의 조사대상 기관 재규정 - 제30조제2항의 차별행위 규정 보완(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위원회 활성화(제41조, 제42조) - 조정위원회를 성·장애 등 분야별로 구성(3인) - 조정위원 구성변경(인권위원2, 위촉위원1 → 인권위원1, 위촉위원2) - 합의권고 절차 없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정절차 개시 가능 - 조정위원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위원회 활성화(제41조, 제42조) - 조정위원회를 성·장애 등 분야별로 구성(3~5인) - 조정위원 구성변경(인권위원2, 위촉위원1 → 인권위원1, 위촉위원2) - 합의권고 절차 없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정절차 개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리(침해 → 침해·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리(침해 → 침해·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원 남녀성비를 10분의 6 이내로 제한

□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이은영 의원안)

○ 개인정보특별위원회 설치(제12조의2)

- 위원회 내에 5인의 정보위원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특별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특별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함

○ 개인정보침해 조사·구제 업무 신설(제19조9호의2)

○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개인정보침해 포함(제30조제1항제3호신설)

※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규정된 사항

- 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치·운영
 - 개인정보침해 신고접수, 상담, 홍보 등
 -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 규칙으로 정함
- 위원회의 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침해 조정 실시

IV. 주요 쟁점사항 검토

<주요 쟁점 사항>

□ 인권위 활동 강화 및 보완

1. 독립성 강화
2. 사무총장 정무직화 및 사무차장 2인 신설
3.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4. 조사권 강화
5. 조사대상 기관 확대
6. 진정인 보호
7.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
8. 권고의 실효성 제고
9. 인권위법 적용범위
10. 용어 변경 등

□ 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11. 성차별시정위원회 설치
12. 인권위원 남녀 성비 구성문제

□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13.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인권위 활동 강화 및 보완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최재천 의원안)

□ 개정안 주요내용

- 예산삭감시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6조제5항)
- 위원회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제18조)
- 사무처 소속직원은 위원장이 임명(제16조제5항)
- 위원회에 헌법기관과 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규칙제정권(제65조)
- 감사원법 제24조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적용 배제, 부패방지법 제47조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추진(제66조)

□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

- 인권위가 독립기관이긴 하나,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서, 헌법기관과 같은 독립성 부여는 곤란(법무부, 기획예산처 등)
- 인권위는 법률에 그 소속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이므로,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직제(대통령령)로 정하여야 함(행정자치부)
- 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의 상위규범인 헌법에서 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조직과 인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

도록하고 있으며, 헌법기관이 아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규칙 제정권을 부여한 사례는 없음(행정자치부)

- 개별법의 개정 없이 특례규정을 통해 각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원칙상 부적절하고, 개별법이 무력화·형해화될 우려가 있음(행정자치부)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

- 특례사항은 헌법기관에 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또는 고도로 독립적인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것임
- 이를 인권위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나 다른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유사 입법례가 없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 검토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제1항에서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인권위를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국가공무원법상 인사와 관련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부소속 공무원만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인권위의 인사에 대하여 협의권을 행사해 옴

○ 유엔은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93.12월 유엔총회 승인)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남아공, 필리핀, 태국 등 많은 외국의 국가인권기구도 국가인권기구를 헌법기관화하여 형식적·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음

○ 예산의 독립성 확보

- 헌법기관의 경우 예산확보과정은 정부부처와 동일하나, 기획예산처가 헌법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헌법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함

- 예산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인권위법 제6조(위원장의 직무)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인권위는 정부부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의 예산요구액을 삭감할 경우에는 헌법기관처럼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관장 부처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방지할 필요

- 방송위원회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방송)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있어 독립성이 방송위원회보다 미흡한 실정임

※ 예산회계법

제29조(독립기관의 예산)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22조(위원장)제5항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조직의 독립성 확보

- 인권위법은 조직법의 성격을 갖기도 하나, 조직에 관하여 인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음
- 인권위 조직은 대통령령인 직제령에 규정됨으로 인해서, 직제령의 관장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통제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인권위의 직제는 헌법기관처럼 인권위의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

※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제9항 : 이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공무원)제4항 : 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원조직법

제53조(법원직원) :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조직)제1항 :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 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사무기구)제11항 : 5급이상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행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제15조(사무기구)제12항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분장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인사의 독립성 확보

- 국가공무원법은 인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공무원의 종류·임용과 시험·보수·복무 등)의 대강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국회 등 헌법기관은 당해 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약 50여개 항목).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공무원 정원확대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
- 인권위의 인사에 관하여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인권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왔음
- 특히, 별정직의 경우 위원회내 자리이동이 되지 않아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인권직군(또는 직렬)을 신설하여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개방직을 확대하여 인권관련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할 필요
- 최근 공무원임용령이 개정('05.2.25)되어 종전 4급 이하 공무원 임용이 위원장에게 위임(종전 6급 이하)되어 위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긴 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 타법률의 적용배제(특례규정)

-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감사원의 직무감찰(감사원법제24조제3항),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2항),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 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범위(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부패방지법(제47조) 등의 적용이 배제됨
- 따라서, 인권위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타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의 적용도 배제되어야 할 것임

※ **감사원법**

제24조(감찰사항)제3항 : 제1항(감찰사항)의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제2항 :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제2항 :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기능 등)제2항 :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법**

제47조(국회등의 특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1조제1호내지제4호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 정무직화 및 사무차장 2인 신설(최재천 의원안)

□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사무차장 2인을 신설(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

- 사무차장 2인 신설은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예견에 따른 것이나 구체적인 실무검토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기획예산처)
- 위원회의 사무지원기구로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둔 사례는 없으며, 사무처의 주요기능을 2개로 분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행정자치부)

□ 검토 의견

<현행개정안>

제16조(사무처)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정개정안>

제16조(사무처)

③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무총장의 정무직화 필요

○ 위원회 조직의 특수성

(1) 독립제기관과의 차이점

- 독립제기구로서의 정부부처는 장관이 모든 권한을 갖고 차관이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장관의 위임에 따라 모든 권한의 행사가 가능한 반면,
- 합의제기구로서의 인권위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이에 필요한 사무처리(결정 준비 및 집행)를 담당하는 사무처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법정기관임
- 합의제기구는 관할 업무의 광범위성, 다양성 및 전문성 때문에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전후로 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는바, 사무총장은 역할·기능 등에 있어 독립제기구의 차관이하의 보조기관과는 크게 다름

(2) 사무처의 사무

- 인권위법에서는 제16조제1항의 위원회의 사무와 제19조의 위원회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상호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제19조의 업무중 의사결정(규칙제정 또는 개별사안 심의·의결)을 제외한 결정준비 및 결정집행 업무는 사무처의 사무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임
- 따라서, 법 제19조의 업무는 위원회와 사무처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며, 결코 어느 하나만 존재로서 가능한 업무는 없음

(3) 사무총장의 비중

-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휘하는 것인바,
- 다음의 합의제 헌법기관 등의 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듯이 사무총장의 지위는 합의제기구의 구성원(상임위원)과 동급이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헌법적 법리임

※ 헌법기관 : 국회사무처장(장관급),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장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

※ 정부기관 : 부패방지위원회사무처장(상임위원 겸직/차관급),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상임위원 겸직/1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총장(상임위원 겸직/1급)

○ 사무총장의 업무영역 확대

- 인권위가 여성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과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할 경우, 그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사무처의 직제의 확대가 불가피한 바, 현 1급직의 사무총장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중요정책사안에 대한 입법·사법·행정부와 협의(통상 차관급 회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의장직 수행 등 국가기관간 협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무총장의 정무직화가 절대 필요함

◆ 상임위원의 사무총장 겸직 불가

- 상임위원은 별도의 업무영역 존재
 -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조정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주재 등 별도의 그 업무 영역이 있음
- 위원 대등의 원칙에 위배
 - 상임위원이 사무총장을 겸직할 경우 사실상 부위원장과 같은 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회의체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위원 대등의 원칙에 위배
- 상임위원 수의 확대 필요성 대두
 - 차별시정기구와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가 인권위로 통합될 경우, 상임위원의 업무가 2배 이상 확대(진정사건 처리 : 현 3천여건→6천여건 이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임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 상임위원이 사무총장을 겸직할 경우 사실상 상임위원직 수행이 불가하므로, 오히려 상임위원 1인 감소 현상을 초래(3인→2인)
 - 대법원의 경우 전 재판관이 상임이기 때문에 재판관중 1인이 사무처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 행정부소속 다른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별도 있으며, 기타 위원회의 경우 조직 규모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180명), 부패방지위원회(139명), 중앙인사위원회(83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82명),
- 따라서, 인권위가 국민들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을 별도의 정무직(차관급)으로 하고,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차장(1급) 2인(정책·교육·홍보/침해·차별 조사·구제)을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3.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최재천 의원안)

□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정책 등의 입안시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제20조제1항, 제20조의2)
- 위원회는 필요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공포(제25조제2항·제5항)
- 사전통보 불이행시 추진중인 법령·정책 등에 대하여 중지권고(제20조제2항)

□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여, 신속·효율적인 법령·정책의 입안·추진에 심각한 장애 발생 우려(법무부 등)
- 인권의 개념이 크게 확대(자유권→사회권, 환경권 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중지 권고를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및 정부조직체계에 위반소지(노동부)
 - 현행 규정을 활용, 인권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범위가 애매하고, 인권위의 판단 여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

□ 한국의 영향평가제 도입현황

○ 환경부의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1999.12.31 제정)에 따라 이미 시행중

○ 여성부의 성별영향평가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2005년도부터 시행 추진(2005.3.11 각 정부부처에 지침 통보)

○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4월 임시국회 통과 예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그 규모나 세부내용에 있어 다소 다르지만 모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 현 문예진흥법을 폐지하고 문화기본법과 예술진흥법을 제정하거나 문화영향평가법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 등 검토 중(2006년부터 도입 추진)

※ 해외 사례

-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제적으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국내외기업활동, 외교경제정책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나, 현재까지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함
- 다만, 정보영향평가(미국, 캐나다 등), 성별영향평가(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노르웨이 등) 등 특정 분야와 관련하여 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검토 의견

- 인권영향평가제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요한 법령·정책 등이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후에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등의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됨
- 다만, 인권위로서는 이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다소 시일이 필요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한 일정한 검토기간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것은 환경(등)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임
- 또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해 본 후 전반적인 인권영향평가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4. 조사권 강화(최재천 의원안)

□ 진정 제기기간 연장

○ 진정제기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제32조제1항제4호)

○ 검토의견

- 진정인 등이 진정원인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3년으로 연장 필요

- 다만, 1년 시한 때문에 각하된 진정을 위원회가 재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둘 필요

※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모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인권위의 권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이 갖는 강제력이 없어 법적 안정성, 행정행위의 확정력을 해할 우려가 적으므로 진정제기 기간을 연장하여도 무방하며,

- 또한 법인, 단체, 사인간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의 경우에는 민사상 원상회복의 성질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점에 비추어, 진정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제기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 조사대상에 수사중인 사건 포함

○ 현재 또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제32조제1항제5호, 제33조제2항·제3항)

○ 법무부 등에서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이며 국가적 낭비 조래하므로 반대 입장

○ 검토 의견 : 수정의견

-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위해서는 수사중인 사건에도 조사대상에 포함할 필요하나, 필요한 범위내 제한 필요

- 따라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조항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

<제1안> : 예외조항을 추가하되, 구체적으로 명시

-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형법 제122조 내지 제127조 및 군형법 제62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안> : 예외조항을 추가하되, “군형법 제62조 및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를 추가

※ 형법 :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진정인 출석요구 조건 **완화**

○ 서면진술 우선규정을 삭제하여 출석요구 조건 **완화**(제36조제4항 삭제)

○ 법무부는 피진정인의 출석요구요건 폐지는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소환을 할 수 없는 수사권보다도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므로 반대 입장

○ 검토 의견

-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는 “권한에 속하는 상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정사건에 대한 사실판단에 있어 조사에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진정사건관련 증빙자료의 원활한 확보와 진상규명,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서면진술 우선조항 삭제 필요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도 제4항과 같은 조항 없음

□ 재정신청

- 위원회의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 미제기시 재정신청(제45조제5항 신설)

○ 법무부의 의견

- 재정신청제도는 형사소송법에서 대상범죄의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인권위에 진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상범죄에 상관없이 재정신청을 허용하게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대 입장
- 현재 재정신청권 확대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중이므로, 개정 결과에 따라 형소법 체계를 고려하여 검토 필요

○ 검토 의견

-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검찰 등 자기식구 감싸기 등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함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공소시효 정지**

- 위원회의 조사진행시 공소시효 진행 정지(제50조의2제1항)
- 법무부는 조사중 사건의 공소시효정지는 진정인의 의사 및 인권위의 조사기간에 따라 국가 형벌권이 좌우되는 결과 초래하므로 반대 입장
- 검토 의견
 - 공소시효 정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

□ **동행명령**

- 출석요구 불응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미행시 과태료 부과(제50조의2제2항내지제8항, 제63조제1항제5호)
- 법무부는 음부즈만으로서의 인권위 성격상(권고기능) 동행명령권 등 강제성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

○ 검토 의견

- 조사 결과는 권고이지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있어서는 일정범위의 강제규정이 필요함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리원칙에서는 인권위는 사실판단을 위해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불응자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어야 함

※ 사례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2조

□ 통신사실 조회

○ 통신사실 조회 규정 신설(제50조의2제9항 · 제10항)

-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실조회는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범죄수사 이전단계인 인권위 조사에 통신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고, 유사 다른 경우에도 허용할 수밖에 없어 통신비밀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

○ 검토 의견

- 동행명령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신비밀침해 우려 등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봄

※ 사례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2조

□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면

-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제50조의2제11항)
- 법무부는 형법상 자수자에 대해 감면은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한데, 인권위의 조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필요적 감면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
- 검토 의견
 - 진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수한 자에 대한 형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

5. 조사대상 기관 확대(최재천 의원안)

□ 개정안 주요내용

- 인권침해(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경우 조사대상기관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제30조제1항제1호)
-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경우 조사대상기관을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정·보호시설,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 확대(제30조제1항제2호)

□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

- 법무부는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기본권은 원래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그 효력은 국가권력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이들 규정의 효력을 공단, 공사, 정부투자기관에까지 확대하여 미치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반대 입장
- 이에 대한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시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조사대상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원의 재판에 포함하여 모든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빠짐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삼아야만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2004.8.26, 2002헌마 302결정)고 결정

□ 검토 의견

-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제1항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원용한 것임
- 그러나, 국가기관 등의 자본금 보유비율에 의하여 위원회법상 국가기관성을 인정할 때 보유비율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이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재투자법인의 경우에 개정안의 조사대상 법인이 되느냐의 문제도 발생
- 또한, 외항선 선장처럼 사인임에도 선원법에 따라 경찰권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는 바, 정부자금의 출자비율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한다’고 판결(1998.8.27, 97헌마372, 398, 417 병합)한 바 있어, 법무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
- 따라서,
 - 제30조제1항제1호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교정 및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을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수행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개정
 - 제3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는 제30조제1항제1호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제2호에 다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행유지(개정하지 않음)가 타당함

6. 진정한 보호(최재천 의원안)

□ 형벌규정 관련

- 진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57조제2항 신설)
- 법무부의 입장
 - 진정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노동·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 구제 및 처벌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구성요건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
 -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범죄구성요건으로 정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소지
- 검토 의견
 - 형벌 규정과 관련, 비록 다른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인권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최재천 의원안)

□ 개정안 주요내용

- 인권위 업무에 의문사의 조사·구제 업무를 포함시킴(제2조제4호 및 제19조제7호)

□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

- 의문사에 관하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충분한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의문사의 발굴 가능성 희박
- 관계부처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의문사 규명은 공신력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발생하는 의문사는 인권위가 직권조사로도 충분히 조사 가능
-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의문사 조사·구제기능과 중복

□ 검토 의견

- 비록 현행 인권위법의 규정에서도 인권위가 의문사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실제 수행해 왔으나(군 의문사 등), 의문사 조사·구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명시할 필요성은 있음
- 또한, 인권위의 의문사 조사·구제업무는 앞으로 일어날 의문사에 관한 것이며, 과거 의문사는 1년(개정안 3년) 이내에 한하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규명과는 중복이 되지 않음
- 단, 위원회의 의문사 조사·구제업무는 일반 수사기관 등의 업무를 감시하고, 그 공정성을 확보하며 예외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8. 권고의 실효성 제고(최재천 의원안)

□ 개정안 주요내용

-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제20조제5항·제6항)
- 권고를 받은 기관은 장은 60일 이내 그 이행여부 통보(제25조제4항)

□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

-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권고기관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회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책수립에 대한 부처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사실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결과 초래
 - 입법기능에 관하여 법무부·법제처 등 법령 전담기관보다 법령에 관한 의견에서 우월적 지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

□ 검토 의견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60일 이내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피권고기관에게 권고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임
- 이는 권고내용 및 이행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미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통하여 이행하도록 협의해 나가는 등을 위한 것인바, 피권고기관의 이행여부(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권고의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임
- 위원회의 권고의 이행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권고기관에서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이행여부를 판단(결정)하는 데에는 60일의 기간이 적정하다고 봄